

수시공시 안내

1. 대상펀드

- 1)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 2)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3) 하나 UBS 라이프사이클 2020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재간접형)
- 4) 하나 UBS 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재간접형)
- 5) 하나 UBS 라이프사이클 2040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 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 6 항에 의거하여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 해지 전 3 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직전 회계결산일 기준)

3. 시행일: 2009년 10월 7일(수)

투자위험등급:
3 등급
[중간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파워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10월 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10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5,000 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펀드코드 |
|-------------------------------------|-------|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50408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5,000 억좌

이 투자신탁은 5,000 억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하나 UBS 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1.주식 | 50%미만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
| 2.채권 | 5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
| 3.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주식부문

-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 원칙
- 단기 시황변화 보다는 중장기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비중 조정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매크로 및 산업분석을 통한 업종별 투자비중의 결정 (TOP DOWN APPROACH)
 - 포트폴리오 구성은 업종대표 대형주와 성장주 성격의 우량 중형주에 균형 투자
 - 코스닥시장에는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위주로 투자
 - 업종선정시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에 가중치 부여
 - 종목은 기업탐방, CEO 및 애널리스트 면담 등 적극적인 Field Survey를 통해 발굴

2) 채권부문

- 섹터별 자산비중 결정과 이에 따른 기본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하는 운용전략을 채택하
되, Enhancement Strategy 병행
 - 현선물 차익거래
 - 스프레드 매매
 - Yield Curve 타기 전략
- 전략적 운용체제에 의한 듀레이션 전략 구사
- 채권운용 세부전략

| 운용전략 | | 세 부 내 용 |
|-------------------------|-------------|--|
| 포트폴리오 전략 | 자산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종목별 Yield Curve 및 스프레드 분석을 통한 교체 • 동일 만기/등급 대비 저평가종목 발굴, 편입 |
| | 전략적 듀레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침(펀드듀레이션 1.5이하) 및 전략 허용 범위내에서 시장 순응적인 듀레이션 전략으로 펀드수익률 제고 |
| Yield Enhancemen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종목간 기간/신용 스프레드 분석 및 교체매매 • 금리향보시 Rolling Effect 고려한 Yield Curve 타기 전략 |
| 듀레이션 (Market Timing)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 대응 |

(2) 비교지수 :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년지수*52.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년지수*52.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 *47.5%)+(CD*52.5%)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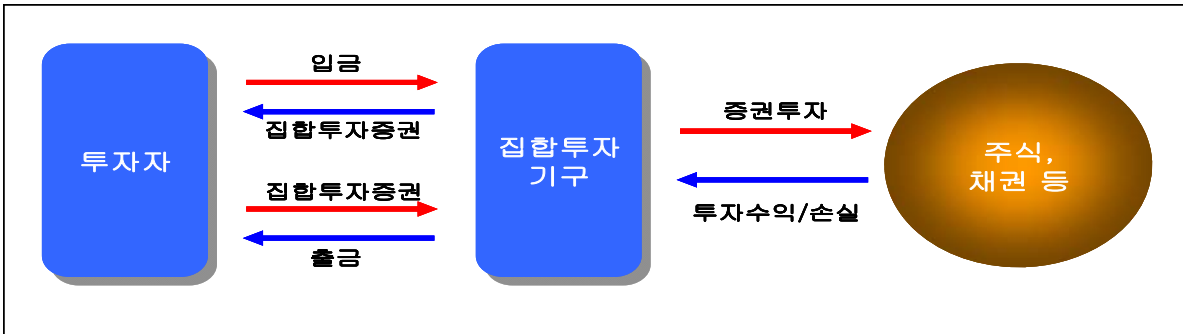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짧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이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

| | |
|------------------------|---|
| |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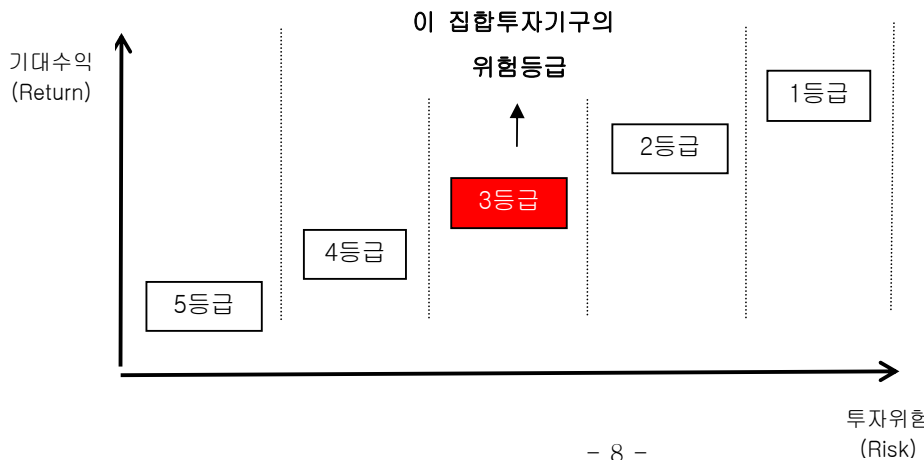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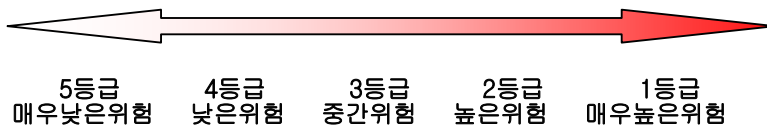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2009.8.7 현재)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 다른운용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자산규모 | |
|-----|------|----|--------------------|----------|---------------------------|
| 기호삼 | 1968 | 부장 | 57 개 | 17,380 억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주식운용 6년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3 개 | 317 억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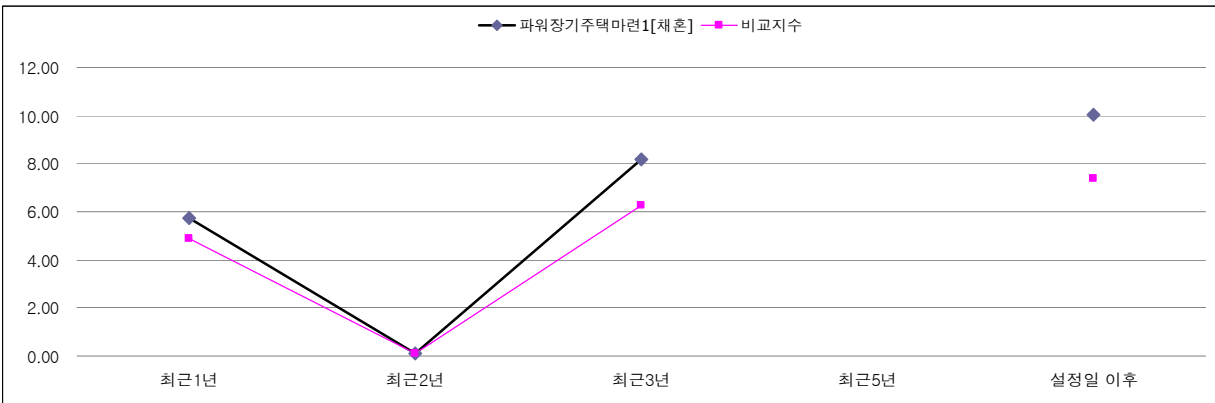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KOSPI수익률*47.5%) + (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

주 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수익률*47.5%) + (CD*52.5%)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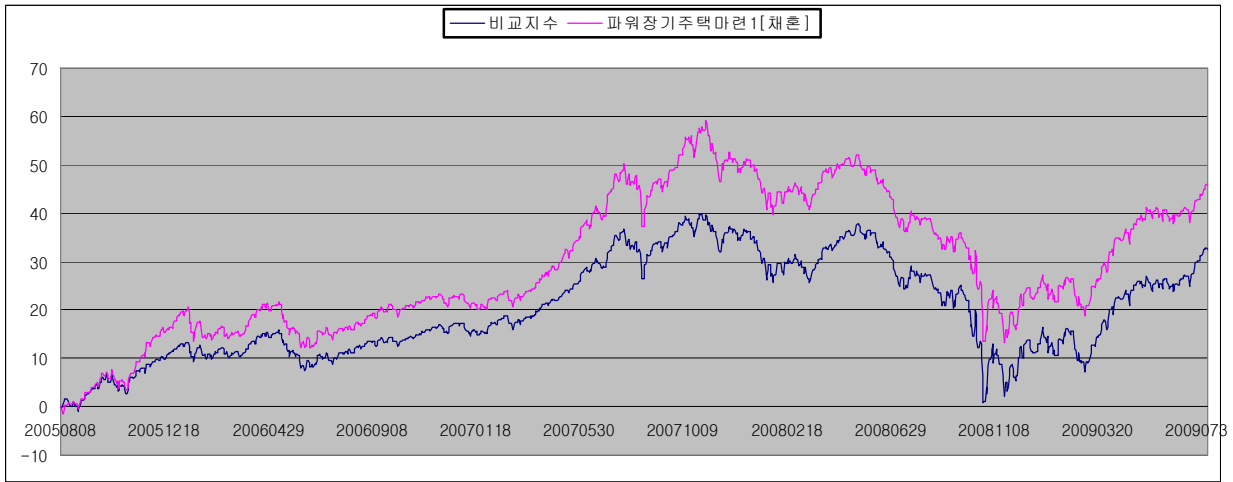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09년 8월 7일, 단위: %)

| 연도 | 최근1년 2008.08.08 ~ 2009.08.07 | 최근2년 2007.08.08 ~ 2009.08.07 | 최근3년 2006.08.08 ~ 2009.08.07 | 최근5년 4 | 설정일 이후 2005.08.08 ~ 2009.08.07 |
|---------------|---------------------------------|---------------------------------|---------------------------------|-----------|-----------------------------------|
| 파워장기주액마련1[채혼] | 5.73 | 0.12 | 8.17 | | 10.02 |
| 비교지수 | 4.91 | 0.12 | 6.27 | | 7.41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09년 8월 7일, 단위: %)

| 연도 | 최근1년차 2008.08.08 ~ 2009.08.07 | 최근2년차 2007.08.08 ~ 2008.08.07 | 최근3년차 2006.08.08 ~ 2007.08.07 | 최근4년차 2005.08.08 ~ 2006.08.07 | 최근5년차 5 |
|---------------|----------------------------------|----------------------------------|----------------------------------|----------------------------------|------------|
| 파워장기주액마련1[채혼] | 5.73 | -5.19 | 26.26 | 15.74 | |
| 비교지수 | 4.91 | -4.44 | 19.72 | 10.88 |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1.016%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기타비용 ^(주 1) | 0.035%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535% | - |
| 증권 거래비용 ^(주 2) | 0.237%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09.8.7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

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09.8.7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구분 (원)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비용 | 157,332 | 495,988 | 869,356 | 1,978,899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1.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것
2. 수익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두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소득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0% | - | - |

다. 일반과세등에 관한 사항

- 수익자가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주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수익자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환매(상환)시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소득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15.4% | - | -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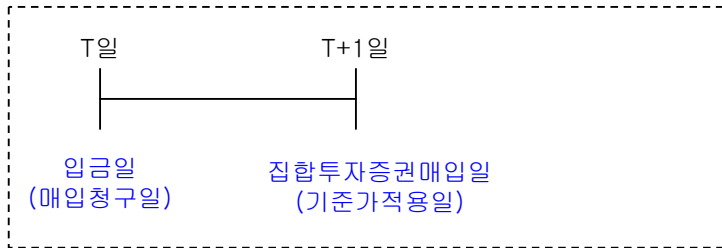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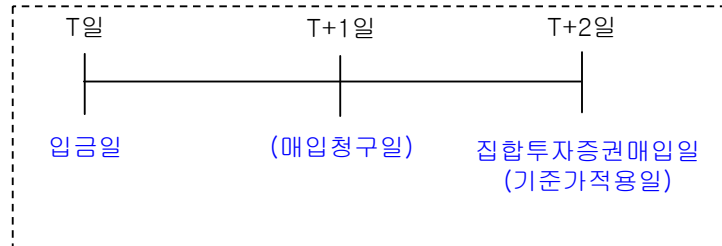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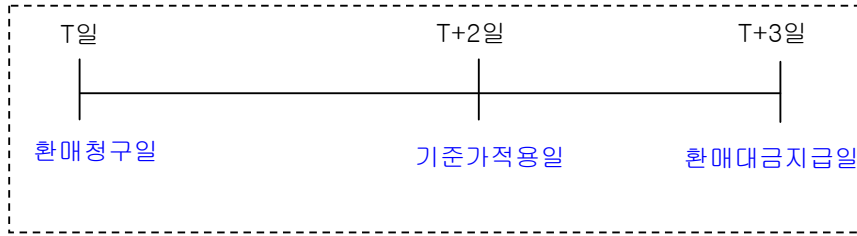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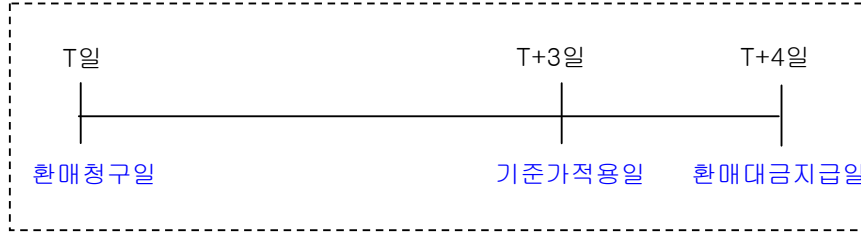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 제 4 기 | 제 3 기 | 제 2 기 |
|------------|----------------|----------------|----------------|
| | 20090807 | 20080807 | 20070807 |
| I. 운용자산 | 45,882,290,415 | 35,972,722,674 | 21,715,686,762 |
| 증권 | 44,324,193,716 | 31,286,102,255 | 20,822,528,199 |
| 현금 및 예치금 | 55,094,294 | 262,620,419 | 205,158,563 |
| 기타운용자산 | 1,503,002,405 | 4,424,000,000 | 688,000,000 |
| II. 기타자산 | 3,087,451,074 | 167,423,118 | 158,484,763 |
| 자산총계 | 48,969,741,489 | 36,140,145,792 | 21,874,171,525 |
| III. 기타부채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부채총계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I. 원본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II. 수익조정금 | -1,145,907,853 | 67,581,206 | 987,019,786 |
| III. 이익잉여금 | 1,258,286,539 | -1,928,326,816 | 3,533,163,893 |
| 자본총계 | 45,748,526,103 | 34,005,898,362 | 21,736,065,736 |
| I. 운용수익 | 3,686,647,826 | -1,482,668,486 | 3,740,734,072 |
| 이자수익 | 1,024,722,843 | 819,822,751 | 358,203,258 |
| 배당수익 | 220,238,170 | 178,184,840 | 86,005,725 |
| 매매/평가차익(손) | 2,435,412,751 | -2,486,962,467 | 3,286,910,930 |
| 기타이익 | 6,274,062 | 6,286,390 | 9,614,159 |

| | | | |
|-------------|---------------|----------------|---------------|
| II. 운용비용 | 567,615,677 | 445,658,330 | 207,570,179 |
| 관련회사보수 | 554,418,215 | 433,361,691 | 197,812,521 |
| 기타비용 | 13,197,462 | 12,296,639 | 9,757,658 |
| III. 당기 순이익 | 3,119,032,149 | -1,928,326,816 | 3,533,163,893 |
| * 매매회전율 | 143 | 117 | 149 |
| * 매매수수료 | 98,877,174 | 58,733,521 | 44,559,124 |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구 분 | 주요내용 |
|--------|---|
| 가입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과 세 |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대상 | <p>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만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주1)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한 ^(주2)세대의 세대주 <p>주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p> <p>주2) 세대의 세대주란? 세대원을 포함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즉, 세대원 중 3억 이상의 1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자가 무주택자 세대주일지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p> |
| 가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
| 저축계약기간 | 7년 이상(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 감면세액추징 | <p>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p> <p>(주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 |

| | |
|---------------------|--|
| | <p>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 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주1)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p>소득공제</p> | <p><u>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u></p> |
| <p>소득공제추징</p> | <p>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p> <p>※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주2)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p>(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p>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입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저축가입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

| | |
|--|--|
| | <p>감면세액 추징 및 소득공제 추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p> <p>-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하는 고객들은 가입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7년째 되는 해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첫 재검증 : 2015.12.31)</p> <p>1. 재검증 대상 : 08.1.1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하는 모든 고객 (다만 08.1.1 이전 가입자는 08.1.1가입으로 간주하여 모두 재검증)</p> <p>2. 검증요건 :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주가 맞는지,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지 등 가입요건의 대략의 사항 검증</p> <p>★ 재검증 때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3억 초과 여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p>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3 등급
[중간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9년 10월 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10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5,000 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명칭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50408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5,000 억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 가능합니다.
-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ubs-han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5040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사항 |
|---------------|---|
| 2005년 8월 8일 | 최초설정일 |
| 2006년 2월 10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가입자격 변경,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및 특별중도해지사유 삭제 |
| 2006년 7월 1일 | 보수분배율 변경 |
| 2007년 8월 1일 | 회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
| 2008년 1월 1일 | 장기주택마련 세법 개정 |
| 2008년 10월 30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격 변경 |
| 2009년 4월 1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격 변경 |
| 2009년 4월 29일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채권혼합투자신탁(제 1 호)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 [채권혼합] |
| 2009년 10월 7일 | - 조특법 반영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직전회계년기준 : 2009.8.7)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하나 UBS 자산운용(주)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대표전화: 02-3771-7800) |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



(2009.8.7 현재)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 |
|-----|------|----|--------------------|--------------|---------------------------|
| 기호삼 | 1968 | 부장 | 57 개 | 17,380 억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주식운용 6년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3 개 | 317 억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1.주식 | 50%미만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
| 2.채권 | 5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

| | | |
|---|--|---|
| | |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
| 3.자산유동화 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
|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
| 6.금리스왑거래 | 채권 또는 채 무증서총액의 100%이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
| 7.집합투자증권 등 | 5% 이하 단,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 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 자증권 |
| 7-1.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1 호의 주식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 |
| 8.환매조건부 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 9.증권의 대여 | 증권 총액의 50%이하 | |
| 10.증권의 차입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20%이하 | |
| 11.기타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 |
| 유동성자산 |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적용예외 1)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경우에는 그 투

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및 환매 조 건부매수 |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p>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 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 |
| <p>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p>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 |
| <p>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p> |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p> | |

| | | |
|------------|---|---------------------|
| 자 | 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 |
|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 투자전략

(1) 주식부문

-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 원칙
- 단기 시황변화 보다는 중장기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비중 조정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매크로 및 산업분석을 통한 업종별 투자비중의 결정 (TOP DOWN



APPROACH)

- 포트폴리오 구성은 업종대표 대형주와 성장주 성격의 우량 중형주에 균형 투자
- 코스닥시장에는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위주로 투자
- 업종선정시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에 가치 부여
- 종목은 기업탐방, CEO 및 애널리스트 면담 등 적극적인 Field Survey를 통해 발굴

(2) 채권부문

- 섹터별 자산비중 결정과 이에 따른 기본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하는 운용전략을 채택하되, Enhancement Strategy 병행
 - 현선물 차익거래
 - 스프레드 매매
 - Yield Curve 타기 전략
- 전략적 운용체제에 의한 듀레이션 전략 구사
- 채권운용 세부전략

| 운용전략 | | 세 부 내 용 |
|-------------------------|-------------|---|
| 포트폴리오 전략 | 자산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종목별 Yield Curve 및 스프레드 분석을 통한 교체 • 동일 만기/등급 대비 저평가종목 발굴, 편입 |
| | 전략적 듀레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침(펀드듀레이션 1.5이하) 및 전략 허용 범위내에서 시장 순응적인 듀레이션 전략으로 펀드수익률 제고 |
| Yield Enhancemen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종목간 기간/신용 스프레드 분석 및 교체 매매 • 금리황보시 Rolling Effect 고려한 Yield Curve 타기 전략 |
| 듀레이션 (Market Timing)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 대응 |

(3) 비교지수 :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년지수*52.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년 지수*52.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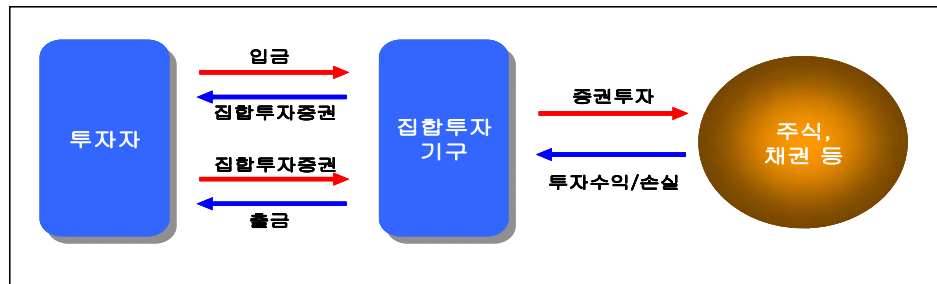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짧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이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가. 일반위험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투자 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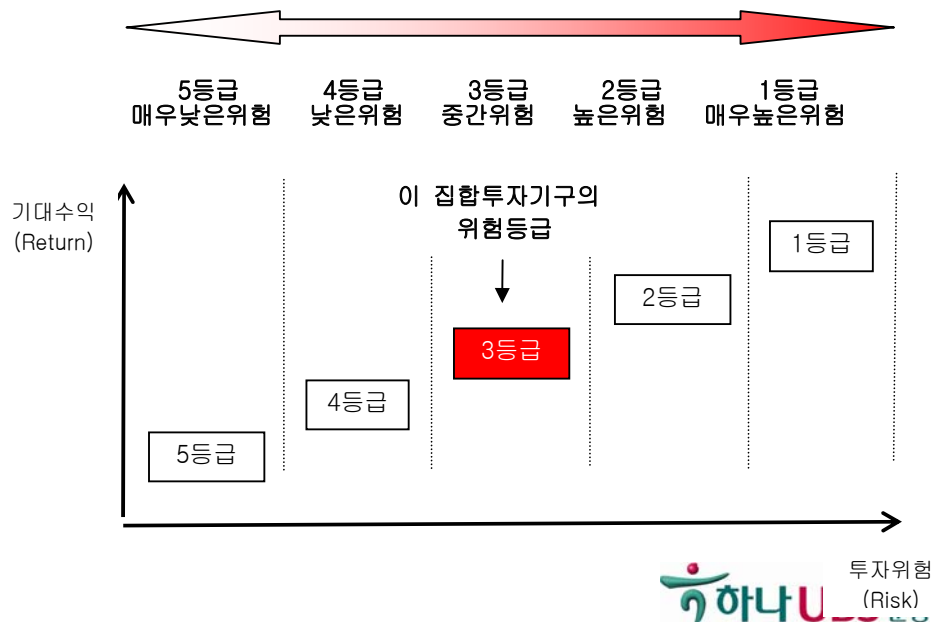
| |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위험 | |
| 환매에 따른 위험 |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1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 기타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가. 매입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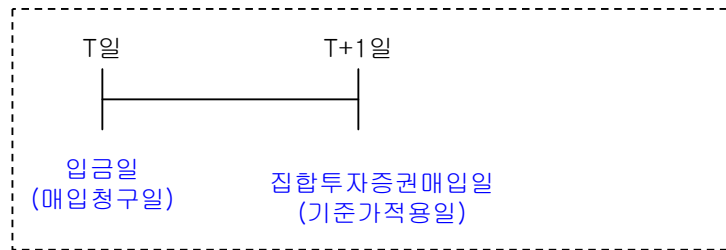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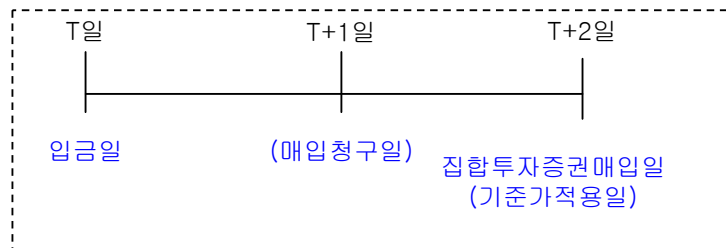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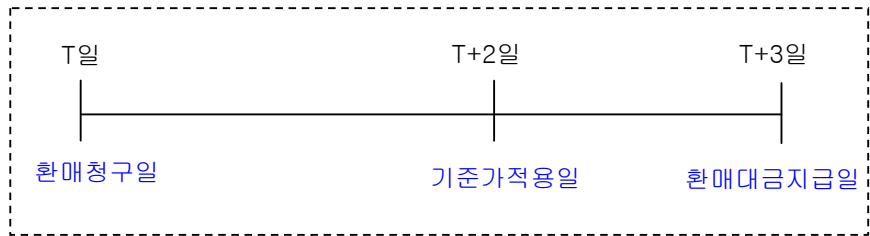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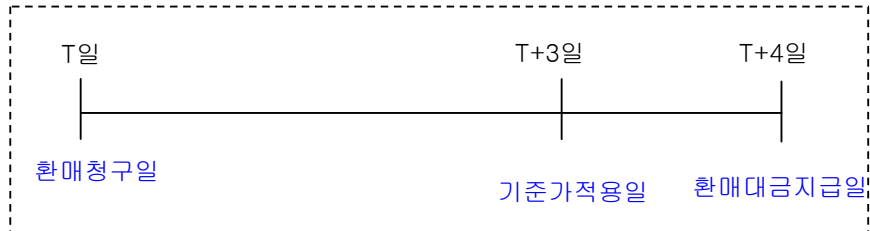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



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구 분 | 부담비율 | 비고 (부담시기)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시 |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4) 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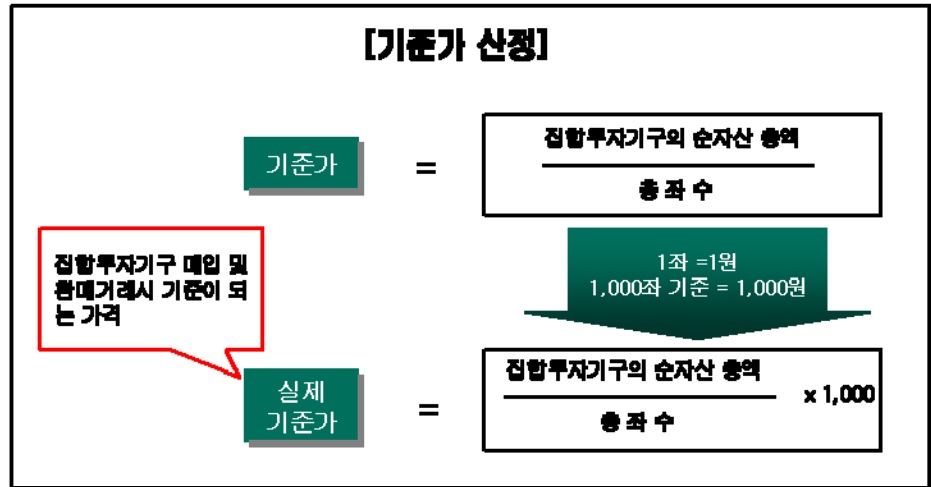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

| | |
|----------------------|--|
| |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중 낮은 가격 |
|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1.016%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기타비용 ^{주1)} | 0.035%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535% | - |
| 증권 거래비용 ^{주2)} | 0.267%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09.8.7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2009.8.7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

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비용 | 157,332 | 495,988 | 869,356 | 1,978,899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소득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0% | - | - |

(3) 감면세액 추정

- 수익자가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주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수익자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환매(상환)시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 | | | |
|-----|-------|------|------|
| 소득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15.4% | - | - |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4 기 (2008.8.8~ 2009.8.7)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제 3 기 (2007.8.8~ 2008.8.7) | 서일경영회계법인 | 적정 |
| 제 2 기 (2006.8.8 ~2007.8.7) | 서일경영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재무정보 | 제 4 기 | 제 3 기 | 제 2 기 |
|-------------|----------------|----------------|----------------|
| | 20090807 | 20080807 | 20070807 |
| I. 운용자산 | 45,882,290,415 | 35,972,722,674 | 21,715,686,762 |
| 증권 | 44,324,193,716 | 31,286,102,255 | 20,822,528,199 |
| 현금 및 예치금 | 55,094,294 | 262,620,419 | 205,158,563 |
| 기타운용자산 | 1,503,002,405 | 4,424,000,000 | 688,000,000 |
| II. 기타자산 | 3,087,451,074 | 167,423,118 | 158,484,763 |
| 자산총계 | 48,969,741,489 | 36,140,145,792 | 21,874,171,525 |
| III. 기타부채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부채총계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I. 원본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II. 수익조정금 | -1,145,907,853 | 67,581,206 | 987,019,786 |
| III. 이익잉여금 | 1,258,286,539 | -1,928,326,816 | 3,533,163,893 |
| 자본총계 | 45,748,526,103 | 34,005,898,362 | 21,736,065,736 |
| I. 운용수익 | 3,686,647,826 | -1,482,668,486 | 3,740,734,072 |
| 이자수익 | 1,024,722,843 | 819,822,751 | 358,203,258 |
| 배당수익 | 220,238,170 | 178,184,840 | 86,005,725 |
| 매매/평가차익(손) | 2,435,412,751 | -2,486,962,467 | 3,286,910,930 |
| 기타이익 | 6,274,062 | 6,286,390 | 9,614,159 |
| II. 운용비용 | 567,615,677 | 445,658,330 | 207,570,179 |
| 관련회사보수 | 554,418,215 | 433,361,691 | 197,812,521 |
| 기타비용 | 13,197,462 | 12,296,639 | 9,757,658 |
| III. 당기 순이익 | 3,119,032,149 | -1,928,326,816 | 3,533,163,893 |
| * 매매회전율 | 143 | 117 | 149 |
| * 매매수수료 | 98,877,174 | 58,733,521 | 44,559,124 |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 대차대조표 | 제 4 기 | 제 3 기 | 제 2 기 |
|----------------------------|----------------|----------------|----------------|
| | 20090807 | 20080807 | 20070807 |
| I. 운용자산 | 45,882,290,415 | 35,972,722,674 | 21,715,686,762 |
| (1) 현금 및 예치금 | 55,094,294 | 262,620,419 | 205,158,563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5,094,294 | 262,620,419 | 205,158,563 |
| (2) 대출채권 | 1,503,002,405 | 4,424,000,000 | 688,000,000 |
| 콜론 | 1,503,002,405 | 4,424,000,000 | 688,000,000 |
| (3) 유가증권 | 44,324,193,716 | 31,286,102,255 | 20,822,528,199 |
| 지분증권 | 20,940,726,780 | 13,601,495,950 | 9,573,493,600 |
| 채무증권 | 23,383,466,936 | 17,684,606,305 | 11,249,034,599 |
| II. 기타자산 | 3,087,451,074 | 167,423,118 | 158,484,763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2,944,125,868 | | 16,866,222 |
| 미수이자 | 77,680,180 | 140,538,942 | 74,362,978 |
| 미수배당금 | 1,882,000 | 2,187,100 | 970,000 |
| 선급비용 | 63,763,026 | 24,697,076 | 62,692,473 |
| 미수환급세액 | | | 3,593,090 |
| 자산총계 (I + II) | 48,969,741,489 | 36,140,145,792 | 21,874,171,525 |
| II. 기타부채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2,984,577,042 | 1,989,925,098 | 55,089,327 |
| 해지미지급금 | 68,480,231 | 11,970,884 | 4,692,919 |
| 수수료미지급금 | 164,838,289 | 128,471,647 | 74,302,613 |
| 기타미지급금 | 3,319,824 | 3,879,801 | 4,020,930 |
| 부채총계 (I + II) | 3,221,215,386 | 2,134,247,430 | 138,105,789 |
| I. 원본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원본액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II. 이익잉여금 | 1,258,286,539 | -1,928,326,816 | 3,533,163,893 |
| 이월이익잉여금 | -1,860,745,610 | 0 | |
| 당기순이익 | 3,119,032,149 | -1,928,326,816 | 3,533,163,893 |
| III. 설정조정금 | -1,583,663,291 | 111,253,589 | 1,191,516,137 |
| IV. 해지조정금 | 437,755,438 | -43,672,383 | -204,496,351 |
| 자본총계 (I + II + III + IV) | 45,748,526,103 | 34,005,898,362 | 21,736,065,736 |

| | | | |
|--------|----------------|----------------|----------------|
| * 총좌수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 기준가격 | 1,002.46 | 948.12 | 1,262.56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제 4 기 | 제 3 기 | 제 2 기 |
|------------------------|-------------------|-------------------|-------------------|
| | 20080808-20090807 | 20070808-20080807 | 20060808-20070807 |
| I. 운용수익 | 3,686,647,826 | -1,482,668,486 | 3,740,734,072 |
| (1) 투자수익 | 1,251,235,075 | 1,004,293,981 | 453,823,142 |
| 이자수익 | 1,024,722,843 | 819,822,751 | 358,203,258 |
| 배당수익 | 220,238,170 | 178,184,840 | 86,005,725 |
| 기타이익 | 6,274,062 | 6,286,390 | 9,614,159 |
|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 6,472,044,481 | 1,053,831,572 | 3,607,299,314 |
| 지분증권매매차익 | 6,048,935,828 | 1,009,491,710 | 3,596,211,651 |
| 채무증권매매차익 | 423,108,653 | 44,339,862 | 9,112,663 |
| 파생상품매매차익 | | | 1,975,000 |
|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 4,036,631,730 | 3,540,794,039 | 320,388,384 |
| 지분증권매매차손 | 3,722,368,404 | 3,470,304,152 | 283,805,301 |
| 채무증권매매차손 | 314,263,326 | 70,489,887 | 36,472,263 |
| 파생상품매매차손 | | | 110,820 |
| II. 운용비용 | 567,615,677 | 445,658,330 | 207,570,179 |
| 운용수수료 | 161,150,895 | 125,963,798 | 57,497,506 |
| 판매수수료 | 375,525,941 | 293,530,324 | 133,985,017 |
| 수탁수수료 | 11,088,362 | 8,667,231 | 3,956,249 |
| 사무수탁수수료 | 6,653,017 | 5,200,338 | 2,373,749 |
| 감사인보수비 | 1,776,500 | 1,870,000 | 1,540,000 |
| 기타비용 | 11,420,962 | 10,426,639 | 8,217,658 |
| III. 당기순이익 (I - II) | 3,119,032,149 | -1,928,326,816 | 3,533,163,893 |
| * 총좌수 | 45,636,147,417 | 35,866,643,972 | 17,215,882,057 |
| * 당기순이익(좌당 or 1000 좌당) | 68.35 | -53.76 | 205.23 |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비고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설정(발행) | | 환매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20060808 - 20070807 | 6,072 | 6,072 | 12,027 | 13,219 | 1,913 | 2,117 | 17,216 | 18,203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029 / 1,029 |
| 20070808 - 20080807 | 17,216 | 17,216 | 17,323 | 17,494 | 3,208 | 3,251 | 35,867 | 35,934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4,535 / 4,535 |
| 20080808 - 20090807 | 35,867 | 35,867 | 14,159 | 12,577 | 4,410 | 3,972 | 45,636 | 44,490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9 / 18 |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KOSPI수익률*47.5%) + (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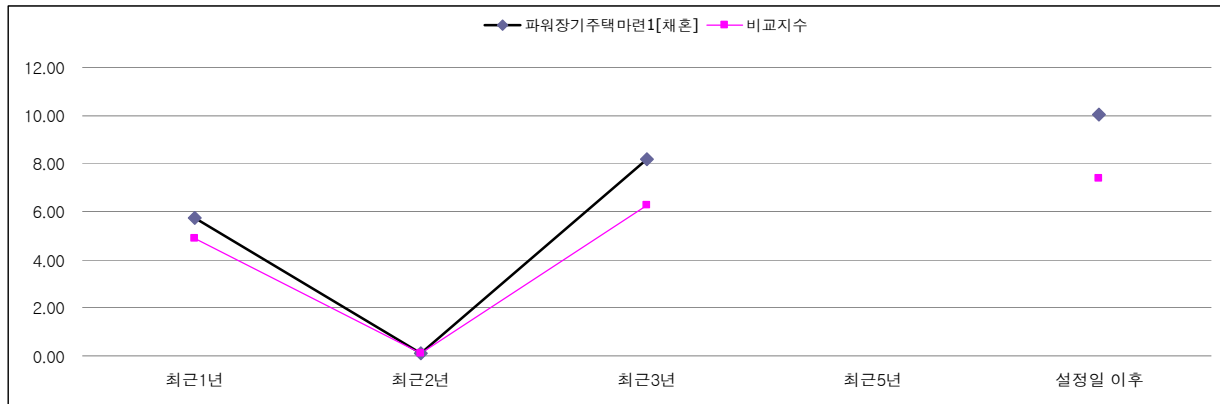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수익률*47.5%) + (CD*52.5%)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09년 8월 7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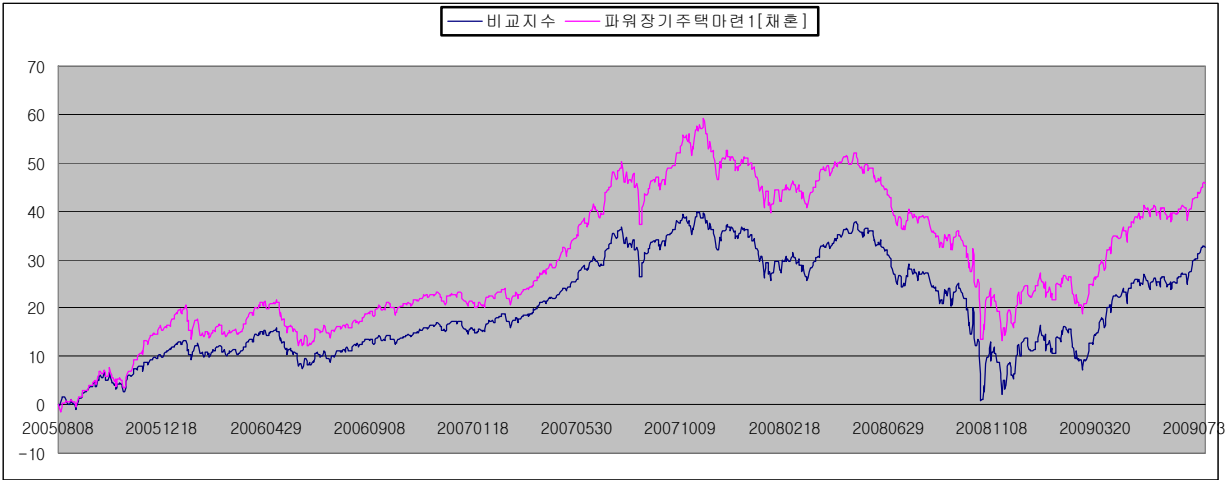
| 연도 | 최근1년 2008.08.08 ~ 2009.08.07 | 최근2년 2007.08.08 ~ 2009.08.07 | 최근3년 2006.08.08 ~ 2009.08.07 | 최근5년 4 | 설정일 이후 2005.08.08 ~ 2009.08.07 |
|-----------------------|---------------------------------|---------------------------------|---------------------------------|-----------|-----------------------------------|
| 파워장기주액마련1[채혼] 비교지수 | 5.73 4.91 | 0.12 0.12 | 8.17 6.27 | | 10.02 7.41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09년 8월 7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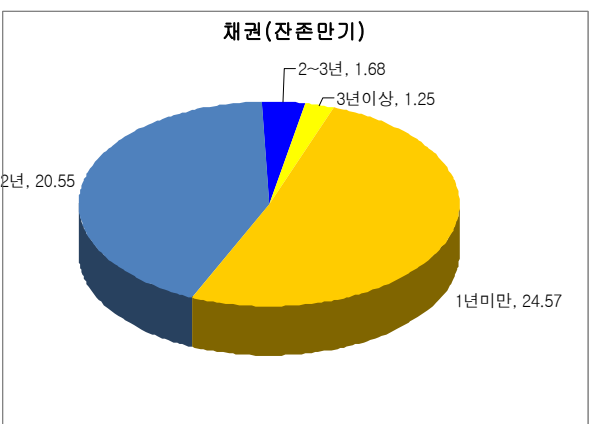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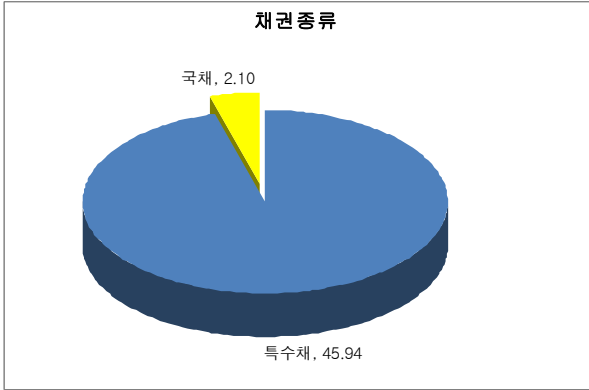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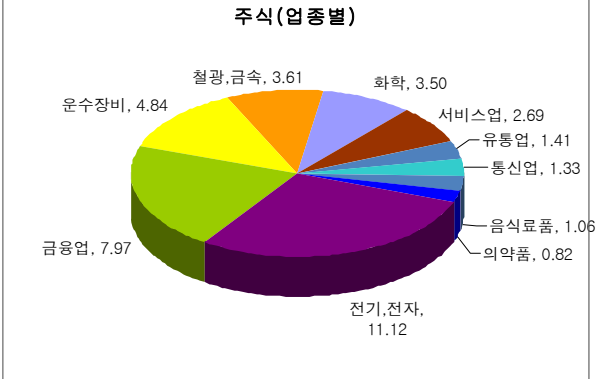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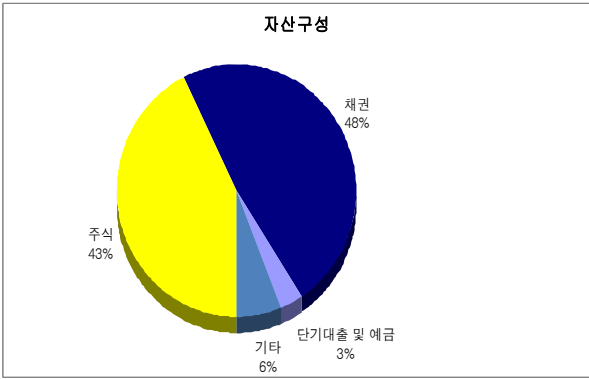
| 연도 | 최근1년차 2008.08.08 ~ 2009.08.07 | 최근2년차 2007.08.08 ~ 2008.08.07 | 최근3년차 2006.08.08 ~ 2007.08.07 | 최근4년차 2005.08.08 ~ 2006.08.07 | 최근5년차 5 |
|---------------|----------------------------------|----------------------------------|----------------------------------|----------------------------------|------------|
| 파워장기주액마련1[채혼] | 5.73 | -5.19 | 26.26 | 15.74 | |
| 비교지수 | 4.91 | -4.44 | 19.72 | 10.8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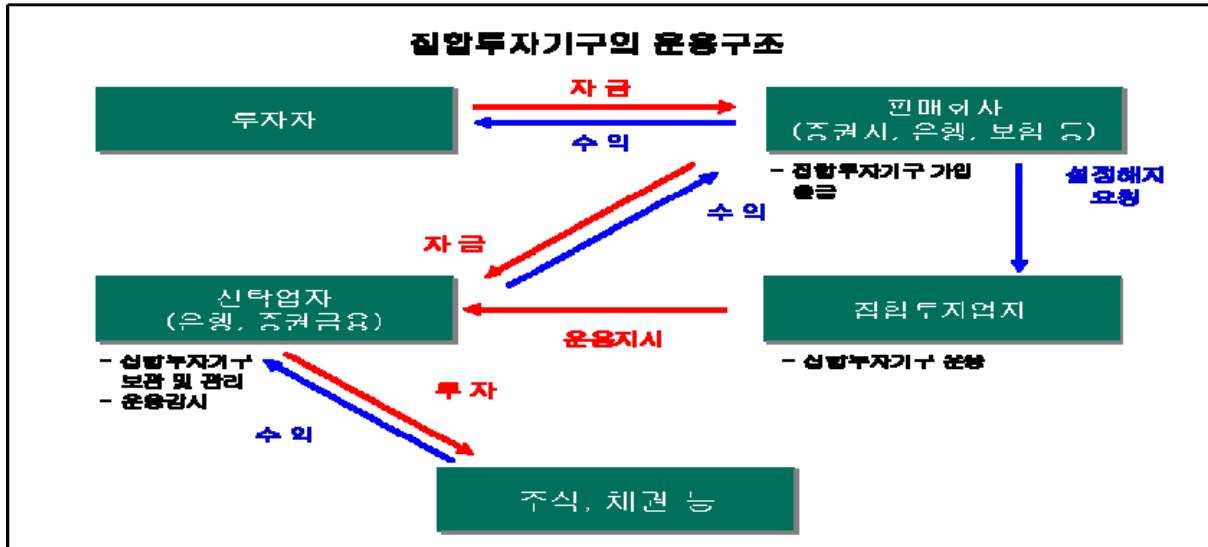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09. 8. 7 기준 / 단위 : 백만원, %)

| 동화별 구분 | 투자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한국 원 | 20,941 (42.76) | 23,525 (48.04)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558 (3.18) | 2,946 (6.02) | 48,970 (100.00) |
| 합계 | 20,941 (42.76) | 23,525 (48.04)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558 (3.18) | 2,946 (6.02) | 48,970 (100.00)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하나 UBS 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800, www.ubs-hana.com) |
| 회사연혁 |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 UBS 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 자본금 | 450 억 |
| 주요주주현황 | UBS AG, 하나대투증권 |

나. 주요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08.03.31 | '09.03.31 | 항 목 | '08.03.31 | '09.03.31 |
| 유동자산 | 71,972 | 63,601 | 영업수익 | 53,891 | 48,426 |
| 고정자산 | 9,476 | 9,628 | 영업비용 | 29,935 | 25,691 |
| 자산총계 | 81,448 | 73,229 | 영업이익 | 23,956 | 22,735 |
| 유동부채 | 13,364 | 7,118 | 영업외수익 | 58 | 36 |
| 고정부채 | 0 | 0 | 영업외비용 | 200 | 428 |
| 부채총계 | 13,364 | 7,118 | 경상이익 | 23,814 | 22,343 |
| 자본금 | 45,000 | 45,000 | 특별이익 | - | - |
| 이익잉여금 | 22,985 | 20,998 | 특별손실 | - | - |
| 자본조정 | 99 | 113 | 법인세 | 6,582 | 6,330 |
| 자본총계 | 68,084 | 66,111 | 당기순이익 | 17,232 | 16,013 |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 2009년 8월 31일 / 단위 : 억원)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파생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자산 | 총 계 |
|--------|--------|--------|--------|-------|-----|-------|-------|---------|
| 29,590 | 34,079 | 22,557 | 70,449 | 3,777 | - | 2,359 | 6,698 | 169,510 |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 가. 신탁회사

련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 가 75 (T :1588-2100) |
| 홈페이지 | http://www.nonghyup.com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HSBC 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영등포구여의도동 26-4 (02-3771-9833) |



| | |
|-------------|---------------------------------|
| 회사연혁 | 2000.3.23 에이엠텍 설립 |
| | 2000. 5. 2 에이엠텍 설립등기 |
| | 2003. 8. 1 HSBC, 에이엠텍 지분인수(82%) |
| | 2004.10. 1 HSBC 펀드서비스(주)로 사명변경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
| 한국채권평가 | (110-730) 서울 중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
| 나이스채권평가 | (150-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02)398-3900 -http://www.npricing.co.kr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
| KIS 채권평가 |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

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 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

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원)

| 이해관계인 | 관계 | 거래의 종류 | 자산의 종류 | 거래금액 |
|-------|----|--------|--------|------|
|-------|----|--------|--------|------|



| | | | | |
|--------|------|------|-----|----------------|
| 하나대투증권 | 주요주주 | 매매거래 | 주 식 | 22,439,845,094 |
| UBS증권 | 계열사 | 매매거래 | 주 식 | 2,590,181,082 |
| 하나대투증권 | 주요주주 | 매매거래 | 채 권 | 20,328,837,500 |

주 1) 직전회계년도 2009.8.7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용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선정기준 |
|-----------------------|---|
| <투자증권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선정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 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 | |
|------------|--|
| | <p>다.</p> <p>-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해당사항 없음
 관한 추가 기재사항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구 분 | 주요내용 |
|--------|--|
| 가입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과 세 |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대상 | <p>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만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주1)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한 ^(주2)세대의 세대주 <p><u>주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u></p> <p><u>주2) 세대의 세대주란? 세대원을 포함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즉, 세대원 중 3억 이상의 1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자가 무주택자 세대주일지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p> |
| 가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
| 저축계약기간 | 7년 이상(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 감면세액추징 | <p>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p> <p>(주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

| | |
|--------|--|
| | <p>(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 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주1)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소득공제 | <p><u>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불입한 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u></p> |
| 소득공제추징 | <p>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p> <p>※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p>(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가입대상의 | <p>-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p> |

| | |
|---------------|--|
| <p>확인과 관리</p> | <p>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입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저축가입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감면세액 추징 및 소득공제 추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하는 고객들은 가입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7년째 되는 해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첫 재검증 : 2015.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검증 대상 : 08.1.1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하는 모든 고객 (다만 08.1.1 이전 가입자는 08.1.1가입으로 간주하여 모두 재검증) 2. 검증요건 :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주가 맞는지,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지 등 가입요건의 대략의 사항 검증 <p>★ 재검증 때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3억 초과 여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p> |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 |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

